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55
----------	-------

발의연월일 : 2025. 7. 25.

발 의 자 : 황명선 · 조계원 · 김현정
박 정 · 박균택 · 김동아
민병덕 · 송옥주 · 정태호
손명수 · 맹성규 · 한준호
송재봉 · 박홍배 · 장철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되어, 시민안전보험이나 학생단체보험 등 공공 목적의 단체보험에서조차 15세 미만을 피보험자로 하여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이에 학교 ·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단체활동 또는 재난, 감염병 등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이 단체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함(안 제732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2. 15세미만자가 학교·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학교·청소년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제735조의3에 따라 체결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3. 15세미만자가 재난·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35조의3에 따라 체결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第732條(15歲未滿者等에 對한 契約의 禁止) 15歲未滿者, 心神喪失者 또는 心神薄弱者の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無效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u> <u>2. 15세미만자가 학교·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학교·청소년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제735조의3에 따라 체결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u>

	3. <u>15세미만자가 재난·감염병</u> <u>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u> <u>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국가</u> <u>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35조</u> <u>의3에 따라 체결한 단체보험</u> <u>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u>
--	--